

등이 훈련대장訓練大將 구인후 具仁후에게 밀고함으로써 탄로 되어 거사 전에 체포되어 옥사가 일어나고 일당이 복주되었다.

심기원이 현직 좌의정에 남한산성의 수어사로서 인신人臣의 극위에서 역모를 한 것은 그 궁극의 뜻이 승명배청崇明排淸에 있고 삼전도三田渡에서 당한 국치를 설하려는 데 있었다. 그래서 성공하면 인조를 선위케 하고 새 임금으로 중국에 사행도 한 바 있는 왕실의 회은군을 세워 중국 남경南京의 명나라와 연합해 북벌北伐 정책을 강행하여 청국을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심기원은 위인이 문무를 겸전한 사람으로 무략武略이 있었으며 위난에 변통하는 기국이 있었으나 병자호란 때 친상중에 기복명起復命을 받고 나와 임금이 피해 나간 서울에 남아 유도대장을 맡았지만 수하에 군사는 하나도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평소 그는 주도면밀한 성격으로 사람이 찾아오면 인접하여 친히 대접할뿐만 아니라 말뜻이 대개 합리하므로 많은 무사가 밤낮으로 그 행랑에 머물며 저마다 용맹을 자랑하고 기이한 계책을 말하느라 문정門庭이 붐빌 지경이었다. 때문에 식자 가운데는 그가 장차 무슨 일인가 일으켜 고종명考終命이 어렵게 되리라고 보는 이가 있었다. 또한 심기원의 정변 목적은 개인이나 당여의 영달이나 정적의 제거가 아니라 대의를 세워 친명親明을 회복하고 조정의 친청세력을 제거하여 진압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북벌을 이루고 청을 멸망시킨다면 조선이 만주지역을 영토로 지배하는 원대한 몽상까지도 모할 수가 있으니 일찍이 인조반정을 일으켜 성공시킨 심기원으로서는 신명을 던져볼만한 거사였다.

이러한 심기원이 가장 두려운 상대는 같은 반정 2등공신으로서 인조의 외종형이며 훈련대장으로 병력을 장악하고 있는 구인후였다. 구인후만 제거하면 궁궐내외에서 심기원에게 내응을 하게 되어 있어 일은 쉽게 성공할 수가 있었다. 1644년 3월 20일 밤에 심기원은 막하의 황헌黃憲과 이원로李元老를 자객으로 구인후의 집에 보냈다. 구인후가 심야에 그 소실과 자고 있는데 급한 일로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였다. 구인후가 불러들이라 하니 소실이 ‘밤중에 공의 잠을 어지럽히는 자가 간세奸細한 무리일지 모르니 마땅히 불을 밝히고 군용軍容을 정제하고 인견하시라’ 하였다. 구인후가 깨닫고 횃불을 밝혀 위졸衛卒을 늘어세운 다음 불러들여 몸을 수색하니 그 소매에 비수를 숨기고 있었다. 이에 황헌 등 자객은 일이 탈로된 줄 알고 고변을 하러 왔다 칭하고는 심

기원의 반상叛狀을 모두 고했다. 구인후가 대궐 앞으로 달려가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으고 장교를 나누어 적당을 체포하는 작전을 하는데 심기원이 40여 결사대를 이끌고 닥쳐와 맞서 겨루려 하였다. 그러나 구인후가 수하를 꾸짖어 그 무리 10여명을 잡아 목자 심기원이 손을 늘어뜨리고 체포되었다. 이렇게 되어 비명형사할찰나에 소실의 기지로 전화위복轉禍爲福을 맞은 구인후는 다시 영국공신寧國功臣 1등에 책훈되고 능천부원군에綾川府院君에 좌의정까지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심기원의 막하로 구인후를 제거하러 갔다가 변신한 황헌과 이원로는 영국공신 2등에 녹훈되었다.

대략 이상과 같은 전말의 심기원의 모역옥사에서 국헌공이 유공하여 영국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에 녹훈되었다. 공이 이 역옥에서 어떤 역할을 하여 원종공에 녹훈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것이 평소 심기원과 친분이나 지우知遇 관계로 말미암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공은 평소 임경업·심기원과 같이 승명배청에 철저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심기원의 계략에 의기가 투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심기원이 모반하리라는 정상情狀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정작 심기원이 임금을 퇴위시키고 그 세자가 아닌 회은군같은 인물을 즉위시키고자 하는 역모에는 인신으로서 가담하거나 호응할 수가 없었던지라 공이 이를 진압하는 데 긴밀히 역할하여 원종훈에 책록되기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된다. 어쨌든 이때에 영국원종공신이 됨에 따라 공은 품계가 통훈대부에서 당상관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서되고 그 부친 송파공은 증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에서가증加贈되어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서되었다.

이처럼 두 차례 원종훈을 받으면서도 공은 끝내 내직內職에 보임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군이 내직으로 분류되는 곳이라면 서반西班에 해당하는 중추부中樞府의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게 있는데 이는 체아遞兒의 한직이므로 실직이라 할 수가 없는 바였다.

인조 24년, 1646년 7월 21일에는 공이 전직 영평현령永平縣令으로서 임금에게 8잠八箴을 지어 올려 호피虎皮를 하사받는 기록이 실록에 나온다.

賜前縣令權武虎皮 忒以庶孽登第 曾爲永平縣令 至是製八箴以進 一曰敬天 二曰恤民 三曰修身 四曰正心 五曰納諫 六曰用人 七曰誠意 八曰愼終.

전현령 권척權忒에게 호피虎皮를 하사하였다. 척은 서열로서 과거에 등제하여 일찍이 영

평현령永平縣令을 지냈는데 이때에 이르러 팔잠八箴을 지어 올리니 하나는 경천敬天에 관한 것이고 둘은 홀민恤民, 셋은 수신修身, 넷은 정심正心, 다섯은 남간納諫, 여섯은 용인用人, 일곱은 성의誠意, 여덟은 신종愼終이었다.

대개 수도 없이 올라가는 상소가 승정원을 거쳐 임금에게 올라가고 임금이 이를 또한 을람乙覽한 뒤 가납嘉納해서 무엇을 회사回賜하는 일은 극히 어렵고도 드문 일이다. 또한 그것이 실록에 기록되는 일은 더욱 힘들다. 그러므로 공의 팔잠소八箴疏는 매우 시의 적절한 명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의 내용 8개항목 이름뿐이고 그 전문은 알 수 없다. 아마 필사본으로 전했을 공의 문집에는 반드시 실렸을 터이므로 실전된 그 문집이 어디에서 발굴이라도 되기 전에는 안될 것이다.

공은 현종 8년, 1667년 7월 24일에 69세로 졸했는데 최종관직은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였다. 숙부인 이씨가 그보다 13년 전에 53세로 졸했고 부인이 먼저 장사된 포천시 영중면永中面 성동리城東里 토이곡坵伊谷이란 곳에 계좌癸坐 상하연분上下連墳으로 안장되었다. 공이 종생한 곳은 서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마방목司馬榜目에 그 장자 해諧가 효종 8년, 1657년의 식년시式年試에 서울 거주 엄시하嚴侍下(부친시하)의 부사맹副司猛으로서 생원에 입격한 것으로 나오고, 3남 의誼는 현종 7년, 1666년의 식년시에 서울 거주 엄시하 유학幼學으로 진사에 입격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의 최종 실직實職은 통정대부 행가평군수行加平郡守 겸 양주진관병마동첨절제사楊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인 것으로 판명된다. 그 아들 3형제, 즉 장자 해諧와 차자 순諱 및 3자 의誼의 사마병목 모두에 부친관직이 행가평군수겸 양주동첨사로 나오기 때문이다.

공은 사후 59년인 경종 2년, 1726년에 그 손자 석碩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서 경대부위에 오름에 따른 3세추증의 은전으로 추증을 받는데 그 교지敎旨에도 최종실직이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때에 추은을 받으면서도 공의 품계는 통정대부에서 더 오르지 못하여 그대로 있고 직임만 승정원좌승지左承旨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으로 추증되었다. 그 신분이 허통을 통하여 관직에 오른 한계를 넘지 못하여 당상관까지는 올랐으나 경대부 지위에까지는 끝내 마치지 못했던 것이다.

공이 얼마 안되는 관직 생활

에서 체아직의 호군이나 첨지중추부사에 보임된 것 외에 한번도 내직에 들어간 적이 없고 군이 내직으로 분류한다면 한성부漢城府의 서부참봉西部參奉에 보임되었던 것을 들 수 있는데 이것도 탄핵으로 잠시만에 체직된 바였다. 그리고 외직으로 작은 고을 몇군데를 역전하였는데 이도 밝혀지는 기록상의 5개 고을 가운데 경기 과천과 충북 음성, 황해도 웅진을 제외하고는 영평·포천·가평 3읍이 다 경기 동북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공보다 13년 선졸한 부인이 영평현치縣治인 지금의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포이곡에 장사되었고 공 또한 사후에 부인과 연분으로 합장되었다. 또한 공의 생모 완산이씨完山李氏가 공보다 3년 앞선 현종 5년, 1664년 6월 22일에 89세로 졸했는데 그 장지가 같은 포천시 영중면의 거사리去思里로서 서로 가까이 인접해 있다. 이곳 국헌공과 그 모부인 묘자의 묘소가 있는 거사리와 성동리 일대가 전자에 모두 권씨 소유였는데 지금은 그 묘역조차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있다. 그러나 이 일대가 생시 국헌공의 전장이나 별업別業이었고 이를 기화로 공이 군이 사환仕宦이라면 사환이라 할 수 있는 고을살이를 전원생활을 겸하고자 이곳에 인접한 영평·포천·가평 등지로 자원하여 택하고 더이상의 진취는 뜻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공은 어떤 연고로 포천의 영중면 일대에 전장이나 별업을 마련했던 것일까. 공의 선대로부터는 영평고을에 전혀 인연이 없었으며 특히 그 부친 송파공은 생평을 한빈으로 보내 자제에게 세업世業으로 무엇을 남겨줄 여유를 갖지 못했었다. 다만 그 생모 완산이씨가 왕실의 서성군西城君 이승조李崇祖의 손녀인 점을 감안할 때 이씨가 친정에서 받아들인 다소의 전산田山이 공에게 상속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공의 처가, 즉 장인인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묘소가 포천에 있고 일대에 그 토지가 있었을 것이므로 부인이 몫으로 분재分財받은 일부의 전산이 있어 이를 가지고 별업을 삼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이 두 차례 원종훈을 받을 때 죄역으로 적몰된 이의 전토·가대家臺와 노비 등을 나누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로로도 공이 이곳에 전장을 얻게 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공은 숙부인淑夫人 경주이씨慶州李氏 영의정 문충공 항복恒福의 서녀를 배하여 5남1녀를 생하였다. 숙부인 이씨는 선조 35년, 1602년 정월 19일 생으로 공보다 3년 연하이고 효종 5년, 1654년 10월 20일에 53세로 졸했다. 장남은 이름이

해諧, 자가 구성九成이고 인조 5년, 1627년에 출생하여 효종 8년, 1657년의 식년시에서 21세의 부사맹副司猛으로서 생원生員 2등 제7인으로 입격한 것 외에 배위와 후사 및 묘소 등 일체의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차남 순諱은 자가 명지命之이고 인조 10년, 1632년 7월 5일에 나서 숙종 5년, 1679년의 식년시에 48세의 유학으로 생원 3등 43인으로 입격하고 숙종 12년, 1686년 10월의 정시문과에서 55세의 사과司果로 병과丙科 제4인으로 급제해 하동부사河東副使에 이르렀으며 뒤에 호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3남 의誼는 자가 사정士正 또는 대유大儒이고 인조 13년, 1635년에 나서 현종 7년, 1666년의 식년시에 32세의 유학으로 진사 3등 제68인으로 입격하여 도사都事와 헌감에 이르렀다. 4남 성誠은 보첩에 진사로 나오나 방목에서는 이름을 찾을 수 없다. 5남 함諡또한 진사이나 방목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고 배위와 후사 또한 기록이 없다. 1녀는 문화인文化人 유기한柳起漢에게 출가했다.

안동권씨의 대동보大同譜를 기준으로 하여 보첩에서 공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공이 처음 등재된 것이 숙종 27년, 1701년의 신사보辛巳譜인데 거기에 ‘서자직庶子忒 문군수文郡守’로 입록되어 있다. 국가에서 허통을 하여 서열을 면하였음에도 족보에서 그 사유를 기입하고 면서함이 없이 그 사가私家에서는 서자庶子로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주기註記의 문군수文郡守는 문과文科를 하여 군수직을 받았다는 뜻이다. 다음에 그 후계로는 자순子諱 문과文科, 자해子諧 진사進士, 자의子誼 진사, 여유기한女柳起漢이 입록되어 있고 그 이하는 수록되지 않았으며 공과 그 3자 모두의 배위나 묘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신사보로부터 30여년 뒤에 나온 영조 10년 1734년의 갑인보甲寅譜에는 공의 기록이 ‘서자직庶子忒 문첨지文僉知’로만 나오고 후손이 일체 기재됨이 없다. 신사보에서는 문과군수로 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문첨치, 즉 문과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이는 갑인보로부터 60년 후인 정조 18년, 1794년에 나온 후갑인보後甲寅譜에 입록된 것과도 똑같다. 이는 그 후손이, 공이 허통이 되어 과시와 사환을 하였음에도 족보에서 탈서입적脫庶入嫡을 하여주지 않기 때문에 대동보 등에 족보수단을 남입시키지 않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1907년의 정미보丁未譜에 이르러 보규譜規에서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의 적서

7면으로 계속